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94

발의연월일: 2025. 1. 14.

발 의 자:임오경·김재원·김윤덕

이용우 · 조계원 · 윤호중

한병도 · 강유정 · 박수현

임광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·인력 등 현황 관리에 한정해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수리 전반의 종합적 인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.

또한, 국가유산수리 품질 개선을 위해 손해배상 책임 대상 확대 및 책임 이행에 대한 보충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 그동안 전 문교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산수리기능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기존 정보·인력에 한정되었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며,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국가유산수리업자 외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까지 확대적용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(공제) 가입을 의무화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 시에도 국가유산수리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, 국가유산수리의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인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자격취득 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국가유산수리에 대한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3 삭제, 제34조, 제37조의3, 제46조, 제53조, 제56조, 제62조, 제54조의2·제54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3을 삭제한다.

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"국가유산수리업자는"을 각각 "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"으로 한다.

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 정보시스템"을 "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"으로 한다.

제46조제2항 중 "국가유산수리기술자나 국가유산감리원이 제53조제1항"을 "국가유산수리기술자,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제53조제1항 또는 제4항"으로 한다.

제5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수리등의 기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. 이경우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고용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.
- ⑤ 제4항에 따라 받아야 할 전문교육의 종류와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4조의2(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)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·실측설계·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및 기술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·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있다.
 -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국가유산수리업자등, 발주자,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입력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따라야 한다.
 -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.
 - ④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한다.
- 제54조의3(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)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국가유산수리등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 -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.

- 1. 국가
- 2. 지방자치단체
- 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·종류·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6조제2항제8호 중 "제14조의3"을 "제54조의2"로, "관리·제공,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"을 "관리·제공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"구축·운영"을 "관리"로 한다.

제62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제5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의3, 제3 7조의3, 제54조의2 및 제56조제2항제8호·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54조의3 및 제62조제1항제11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, 제46조제2 항 및 제53조제4항·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 ·제54조의3 및 제62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 행 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전문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)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제4항·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국가 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	정	안	
제14조의3(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	<삭	제>			
정보관리 등) ① 국가유산청장					
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자본					
금, 경영실태, 국가유산수리등					
실적, 기술인력 보유현황, 국가					
유산수리에 필요한 자재·인력					
의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					
적으로 관리하고, 그 정보가					
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					
등에 제공할 수 있다.					
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					
른 정보를 종합적·체계적으로					
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					
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・운영					
<u>할 수 있다.</u>					
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					
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					
국가유산수리업자등, 발주자,					
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					
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					
있으며, 이 경우 요청을 받은					
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					
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					
④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					

템의 구축·운영 및 국가유산 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한다.

- 제34조(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 배상책임) ① <u>국가유산수리업</u>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 - ② <u>국가유산수리업자는</u>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 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③ • ④ (생 략)

제37조의3(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)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14조의 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한다.

1. ~ 3. (생 략)

제34조(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
배상책임) ① 국가유산수리업
자등은
,
②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37조의3(국가유산수리 정보의
공개)
제54조의2에 따
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46조(시정명령 등) ① (생 략)

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 리기술자나 국가유산감리원이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.

제53조(전문교육) ① ~ ③ (생 략)

리기능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46조(시정명령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국가유산수 리기술자,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 제53조제 1항 또는 제4항-----

제53조(전문교육) ① ~ ③ (현행 과 같음)

④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 | ④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 유산수리등의 기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 아야 한다. 이 경우 국가유산 수리기능자를 고용하고 있는 <u>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</u> 대하여 는 제3항을 준용한다.

> ⑤ 제4항에 따라 받아야 할 전 문교육의 종류와 실시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

제54조의2(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) ① 국가유산청 장은 국가유산수리 • 실측설계

· 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및 기술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·체계적으로 관 리하고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 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수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·운영을 위하여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국가유산수리업자등, 발주자,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입력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.

④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・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54조의3(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

<신 설>

는 공제의 가입) ① 국가유산 수리업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국 가유산수리등 목적물 또는 제3 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.

-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제1 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 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 하여야 한다.
- 1. 국가
- 2. 지방자치단체
- 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
-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 제의 기간·종류·대상 및 방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6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	제56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		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		
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·도	2				
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					
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					
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					
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					
다.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을					
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					
다.				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			
8. <u>제14조의3</u> 에 따른 국가유산	8. <u>제54조의2</u>				
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					
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의	관리				
관리·제공, 국가유산수리종	<u>·제공</u>				
합정보시스템의 구축・운영					
9. 제36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	9				
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					
서의 데이터베이스 <u>구축・운</u>	관리				
<u>영</u> 및 공개					
10. (생 략)	10. (현행과 같음)				
제6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	제62조(과태료) ①		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					
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					
부과한다.					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				

<u> <신 설></u>	11. 제54조의3제2항을 위반하
	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
	<u>지 아니한 자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